

영등포구의회
제16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1. 9. 19.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朴 鍾 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75호로 2011년 9월 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자치구 디자인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중복심의 요소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서울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도시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시행 등(안 제3조~안 제6조).

- 1)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도시디자인 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다.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안 제19조).

-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1인) : 부구청장
- 부위원장(1인) : 디자인업무 담당국장
- 위원 : 구의원, 도시계획, 건축, 조경, 조형예술, 색채, 디자인 등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

2) 임기 : 2년, 연임가능

3) 심의대상

-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하 사업의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의 디자인 및 경관조명 설치에 관한 사항[별표]
-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업의 시행 중 사업내용, 범위, 사업비 등이 30%이상 변경시 재심의를 거쳐야 함.

라. 영등포구 디자인상(안 제21조).

- 1) 민간부문의 도시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창의성과 활용성이 뛰어난 공공시설물 등에 디자인상 시상 및 부상 지급에 관한 사항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0.7.15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08.2.21 제정·시행되어 오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 1) 안 제3조에서는 영등포구 도시경관을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2) 안 제5조는 도시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3) 안 제7조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서울특별시 및 구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함.
- 4) 안 제8조에서 제19조까지는 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 및 회피사항 등 기존 위원회 운영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함.
- 5) 안 제20조, 제21조에서는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디자인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맞추어 우리구 심의대상 사업규모 등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여 일관된 도시디자인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거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5.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경관법」,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 나. 예산조치 : 사업계획에 따라 확보 시행
- 다. 서울시 자치구 조례 현황 : 중구 외 23개 자치구

관 련 법 령

■ 경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3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하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04.22)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04.22)

1.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디자인의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관리

3.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04.22)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서울특별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2009.04.22)

제4조(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09.04.22)

② 시장,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09.04.22)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4.22)

1.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4.22)
2.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09.04.22)
3.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신설 2009.04.22)
4. 별표 1의 심의대상 시설물(자치구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가로환경조성사업 및 경관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개정 2009.04.22, 2010.7.15)
5. 「경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사항(신설 2008.05.29)
(개정 2009.04.22)
6.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개정 2009.04.22)
7.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0.7.15)
8.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 대상에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과 서울특별시 표준형디자인 제품은 제외한다. (신설 2010.7.15)

③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9.04.22)

1. 「경관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 사항(신설 2009.04.22)
2. 자치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15)
3. 그 밖에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9.04.22)

④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디자인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09.04.22)

1.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신설 2009.04.22)(개정 2010.7.15)
2. 자치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15)
3. 자치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15)

⑤ 구청장은 구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9.04.22)